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설치 사업자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구분	[] 민간 보조사업	[]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 기타()		
시설 구분	[] 고정식	[] 이동식	[] 기타()		
충전대상 구분	[] 일반(승용차)	[] 특수(버스, 화물차 등)	[] 기타()		
설치 용도	[] 연구용	[] 상업용	[] 기타()		
설비 규모	충전용량 kg/hr		동시충전 가능 차량대수 대		
수소연료 공급방식	[] 튜브트레일러	[] 현장생산 공급	[] 가스배관 연결	[] 기타()	
설치 비용 (건축비 포함)	천원				
부지 조건	부지 위치(주소)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부지 면적 m²		건축 면적 m²		
	건폐율 %		연면적 합계 m²		
	연면적 합계(용적률 산정용) m²		용적률 %		
사업기간	~ (개월)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1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18에 따라 위와 같이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작성한 서류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